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11.

의안 번호	412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6. 11.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

나. 상정의결

- 제295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1. 6. 1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장원석)

가. 제안이유

○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강남사랑상품권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강남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종류, 권면금액 및 할인판매 범위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및 제8조제2항)

○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사용자의 준수사항(안 제6조)

○ 판매대행점·운영위탁기관 등의 선정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안 제8조)

○ 환수조치 및 과태료 부과(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5년 예산에 302억 9,700만원 반영되었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1. 4. 30. ~ 5. 20.) 결과 : 내부 의견 수렴으로 일부 조항 수정

❍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 구체화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 구청장의 상품권 유효기간 단축·연장 권한 →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단기간 소비증진이 필요한 경우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

▸ 판매대행점 및 운영위탁기관 등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제출 → 판매대행점 및 운영위탁기관 등은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 잔액환급비율 명시 : 잔액환급비율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

❍ 불필요한 규정 삭제 (제3조제5항)

▸ 상품권의 권면금액(1, 5, 10만원권) 외 예외 규정 삭제

❍ 선불전자지급수단 외 보조수단 활용의 목적 명시 (제3조제4항)

▸ 디지털 취약계층 편의성 추가 확보 시

❍ 법률에 규정된 용어 및 내용 일치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2호다목)

▸ 운영대행사 → 운영위탁기관 등

▸ 환전대행가맹점의 복권 및 타 상품권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환전 등 금지 규정 삭제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지역사랑상품권은 소규모 지역 공동체에서 회원들 간에 돈 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공동체 화폐(대안화폐)로 시작되었음. 1999년 대전시 지역품앗이 한밭레츠에서 노동력 교환수단인 공동체화폐 '두루'를 사용한 것이 최초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과천품앗이 아리', '광명품앗이 그루', '성남사랑상품권', '노원구 노원(NW)', '군산사랑상품권', '시흥화폐 시루' 등이 발행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소규모 지역 공동체에서 대안화폐로 사용해 오던 것을 서울시가 지역상권·지역경제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억제, 골목상권 보호 등의 목적으로 2019.12.31.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근거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20.7.2. 시행되었음.

-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최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1]이 제기되었음.

- 지역사랑상품권의 분석한 연구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음.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긍정적인 연구[2]가 있음. 한편,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연구[3]

---

1) 여효성,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2019년 1~4분기 종합」, 『경기연구원 정책브리프』, 2020.9.4; 송경호 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9.15.

2) (여효성,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pp.106-109). (이상훈 외,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경기연구원, 2019, pp.76-95).

3) (송경호 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 한국조세재정연구

연구도 있음.

- 2020년 9월 23일 기준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93.8%)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액은 2015년 892억원, 2020년 9조원(228개 단체)으로, 최근 들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상품권 발생, 할인율 경쟁, 포인트·캐시백 제공 등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조례라는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고

-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4]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의규정이 이미 되어 있는 바 '강남사랑상품권' 에 대한 정의규정은 <예시>[5]와 같이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제2호의 "운영위탁기관 등" 정의규정은 "운영위탁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3호의 "사용자"는 개인 또는 법인도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 가능함으로 '사람'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위 법률에서 이미 사용[6]하는 용어를 조례에서 용어정의 하는 것은 법률해석을 조례로 제한할 수도 있는

원, 2020.9.15.).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5) **<예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남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불수단을 말한다.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3조(상품권의 발행)제2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다만,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예시>[7]와 같이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3항 중 ‘타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4항에서는 상품권을 현재의 사용방식인 제로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불수단’으로만 운영하려는 규정으로 보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유가증권, 선불카드 활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다른 상품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제1항에서는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8]는 가맹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점신청서 서식이 없는 바 별지 서식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법 제7조제4항에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2항제1호 및 제4호는 이미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고 조례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제5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등록거부를 한정하고 있음에도 포괄적·자의적 규정으로 보임. 현재 매출 10억 이상 대형학원 등을 등록거부하는 것

---

7) **<예시>**
③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은 법률에서 규정한 의도와 차이가 있는 바 등록 제한업종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음. 제3항에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법 제8조제1항[9]을 재기재한 것으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다만,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일정기간(1년 또는 2년 등) 재등록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제4항 중 '구청 홈페이지'는 '구 홈페이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의 준수사항은 법 제10조[10]를 재기재하고 있는 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제1항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법 제11조[11]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판매대행점·운영위탁기관 등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제1항에서는 법 제6조[12]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보임. 2021.2.1. 체결된

---

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남사랑상품권 판매운영대행 협약서에 따르면 강남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은 비즈플레이주식회사로, ‘운영대행사’는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3자 협약되어 있음. 제2항에서는 법 제18조제1항[13]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가맹점 모집 및 등록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제3항 중 ‘2항’은 ‘제2항’으로, ‘구청 홈페이지’는 ‘구 홈페이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아울러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적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므로 다른 조례의 <사례>[14]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5항의 규정 내용은 조의 제목과 의미가 달라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상품권의 잔액환급비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단서조항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강남사랑상품권 이외에 별도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적절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임. 또한 구입이 아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사례>[15]와 같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육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③ 제1항에 따라 육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센터의 운영 등)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8조(사업 및 지원)의 조 제목을 ‘(상품권 사업의 지원)’으로 하고, 제1항 중 ‘이를 추진하는 자’를 ‘사업을 위탁받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제2항[16]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최대할인은 10퍼센트 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추가충전금 지급 등 보상을 제공하려는 바 추가충전금에 대한 ‘용어정의’와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가맹점(개별가맹점·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임. 아울러 단서조항을 <예시>[17]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관련 지침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제3항에서는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또는 법인의 구매한도는 조례에서 일정범위(70만원~100만원)를 정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가맹업종 제한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바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9조(환수조치) 중 ‘가맹점 및 사용자가’는 삭제하는 것이 조문구성상 바람직해 보이고 법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환수하려는 것임. 법 제20조[18]에 가맹점은 법률에 행정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7) **<예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15 범위에서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3.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1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인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례에 따라 환수조치가 되고, 사용자는 조례에 따라 환수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수조치는 할인보전금의 범위에서 가능한 바 이는 상품권 금액의 10퍼센트에 불과해 상품권의 부당사용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있음.

- 안 제10조(과태료 부과)에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7조 규정을 재기재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시행규칙)의 규정은 포괄적 위임으로 보여 <예시>[19]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가맹점등록과 판매대행점, 운영위탁기관을 이미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인 바 법적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법령과 상위 기관 조례를 참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수정 사항이 많은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은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다면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하겠음.

1.~2. (생략)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19) **<예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12호

제안일자 : 2021.6.11.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리하고, 입법체계에 맞게 조 제목 및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며,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강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의의 간소화 및 “추가충전금”관련 호 신설(안 제2조)

○ 조항과 관련 없는 조문 삭제 및 환불, 구매한도 규정 신설(안 제3조)

○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 및 자구 정비(안 제4조)

○ 환급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6조)

○ 상품권 잔액 환급비율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

○ 상품권 사업의 구체화를 위하여 조의 제목 정비 및 관련 호 신설(안 제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운영위탁기관 등” 이란” 을 “ “운영위탁기관” 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남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 · 판매하고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불수단을 말한다.

3. “추가충전금” 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되는 상품권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안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단기간 소비증진이 필요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으로, “단축하거나 연장” 을 “단

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타 지방자치단체장” 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⑦ 사용자의 월별 구매한도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 을 “법 제7조제1항” 으로, “업소” 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요건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남구에 위치한 사업자로 하며, 업소” 로,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을 “신청서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인정하는” 을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으로 한다.

3.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을 “법 제8조제1항” 으로, “구청 홈페이지” 를 “구 홈페이지” 로 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상품권 잔액 환급비율 등)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안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판매대행점 · 운영위탁기관 등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을 “(판매대행점 · 운영위탁기관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항” 을 “제2항” 으로, “운영위탁기관 등” 을 “운영위탁기관” 으로, “구청 홈페이지” 를 “구 홈페이지”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8조의 제목 “(사업 및 지원)” 을 “(상품권 사업의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추진하는” 을 “사업을 위탁받는” 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15 범위에서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안 제8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제1호에 따른 재난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3.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를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를 “법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6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안 제11조 중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남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1. “강남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불수단을 말한다.
2. “운영위탁기관 등”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가맹점 모집 및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운영위탁기관”이란 ----------.
3.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	3. “추가충전금”이란 선불전자지급

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수단으로 발행되는 상품권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① (생 략)	제3조(상품권의 발행) ① (원안과 같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 ----------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단기간 소비증진이 필요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 단축----------.
1. 제8조제3항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삭 제>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단기간 소비증진이 필요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③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한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④ ----------

“구”라 한다)로 하되, 구청장은 생활권·경제권이 일치하여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한 경우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⑤ (생 략)	⑤·⑥ (원안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사용자의 월별 구매한도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⑥ (생 략)	⑧ (원안 제6항과 같음)
제4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7조제1항---------- ----------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요건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남구에 위치한 사업자로 하며, 업소-- - 신청서를 ----------.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 ---------- ---------- ---------- --.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	<삭 제>

업을 운영하는 경우	
2.·3. (생 략)	1.·2. (원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3.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삭 제>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
③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삭 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	③ ------ 법 제8조제1항--------

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구 홈페이지 ----------.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삭 제>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삭 제> (원안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상품권 잔액 환급비율 등)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대행점·운영위탁기관 등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라 선정된 판매대행점 및 운영위탁기관 등과의 협약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	제6조(판매대행점·운영위탁기관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② (원안과 같음) ③ ---------- 제2항-------- ---------- 운영위탁기관---------- 구 홈페이지 ----------. ④ (원안과 같음)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품권 사업의 지원) ① ---------- 사업을 위탁받는 ----------.
1. ~ 4. (생 략)	1. ~ 4. (원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보상을 제공하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15 범위에서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제1호에 따른 재난

<신 설>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신 설>	3.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③ 구청장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 1. ------ 법 제10조---------- 2. ------ 법 제11조----------
1. 가맹점이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12

제출년월일 : 2021. 5. 28.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지역경제과

1. 제안이유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남사랑상품권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강남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종류, 권면금액 및 할인판매 범위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8조제2항).

다. 강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용자의 준수사항(안 제6조)

마. 판매대행점·운영위탁기관 등의 선정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안 제8조)

사. 환수조치 및 과태료 부과(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5년 예산에 302억 9700만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4. 30. ~ 5. 20.) 결과 : 내부 의견 수렴으로 일부 조항 수정

○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 구체화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 구청장의 상품권 유효기간 단축·연장 권한 →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단기간 소비증진이 필요한 경우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
- 판매대행점 및 운영위탁기관 등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제출 → 판매대행점 및 운영위탁기관 등은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 잔액환급비율 명시 : 잔액환급비율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

○ 불필요한 규정 삭제 (제3조제5항)

- 상품권의 권면금액(1, 5, 10만원권) 외 예외 규정 삭제

○ 선불전자지급수단 외 보조수단 활용의 목적 명시 (제3조제4항)

- 디지털 취약계층 편의성 추가 확보 시

○ 법률에 규정된 용어 및 내용 일치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2호다목)

- 운영대행사 → 운영위탁기관 등

- 환전대행가맹점의 복권 및 타 상품권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환전 등 금지 규정 삭제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남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운영위탁기관 등”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가맹점 모집 및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단기간 소비증진이 필요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되, 구청장은 생활권·경제권이 일치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한 경우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 및 상품권 이용 등에 대한 편의성 추가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명칭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발행일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 또는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판매대행점·운영위탁기관 등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유통·가맹점 모집 및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운영위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라 선정된 판매대행점 및 운영위탁기관 등과의 협약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 및 운영위탁기관 등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보상을 제공하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과태료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영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판매대행점·운영위탁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판매대행점과 운영위탁기관 등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강남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및 운영수수료 등 (안 제7조, 제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도 : 편성된 예산 반영
- 2022~2025년 :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예정 금액 추계 (연 500억 발행)
  · 할인보전금은, 운영수수료 지원은 2021년 수준으로 추계하였음.
  (할인보전금 시비 5%, 구비 5%, 운영수수료 전액 시비)
  · 홍보비용 연 10,000천원으로 추계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세출	○할인보전금	7,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7,000,000
	○운영수수료 홍보비 등	1,057,000	560,000	560,000	560,000	560,000	3,297,000
	소계(b)	8,057,000	5,560,000	5,560,000	5,560,000	5,560,000	30,297,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국비		-	-	-	-	-	-
시비		3,335,000	3,050,000	3,050,000	3,050,000	3,050,000	15,535,000
구비	지방세수입	4,722,000	2,510,000	2,510,000	2,510,000	2,510,000	14,762,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8,057,001	5,560,002	5,560,003	5,560,004	5,560,005	30,297,0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지역경제과, 행정7급, 하선영, 02-3423-5498